

공고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2022-142호

2022년 경북 5G융합제품 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지원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북 5G융합제품 상용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8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경북 지역의 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품 발굴 및 지원
- 경북 5G 선도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5G 융합산업 육성

2. 모집대상

- (지원대상) 5G 융합제품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수행기관별		지원자격
주관 기관	기업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사업자등록증 기준) 또는 등록공장이 있는 기업 <small>*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근거, 경북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이여야 함</small>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위탁 기관	영리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 기업

< 참고 >

1. 위탁기관 참여

-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등록공장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3. 대학 및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지원제품) 5G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

< 지원제품 예시 >

디바이스	서비스
모바일기기, 네트워크 장비, 모듈, 안테나, 부품 등	AR/VR 콘텐츠, 빅데이터·인공지능 솔루션, 게임 등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년, 1억 원 내외

< 과제당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구분	디바이스	서비스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외 - 당해연도 : 협약시작일 ~ '23. 6. 3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외 - 당해연도 : 협약시작일 ~ '23. 6. 30까지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25억원 내외 - 당해년도 : 1.25억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0.75억원 내외 - 당해년도 : 0.75억원 내외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협약 체결 시 당해년도 지원금 60% 지급2. 중간평가('23년 2월 예정) 실시 후 잔여금 40% 지급

□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 지원금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참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5.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헤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전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6.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대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3. 추진일정

사업공고	'22. 8. 1 ~ 8. 19.	사업공고(공기기간 연장)	GERI
▼			
사업계획서 접수	~ '22. 8. 19	사업계획서 접수	GERI
▼			
서면평가	'22. 8. 22 ~ 8. 23	지원 자격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확인 서류 평가	GERI
▼			
현장(사업장) 방문평가	'22. 8. 24. ~ 8.26	사전 현장방문평가	GERI→기업
▼			
발표(선정) 평가	'22. 9. 1 ~ 9. 2	추진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기업
▼			
사업자 확정 · 통보	~ '22. 9. 8	평가결과 통보	GERI→ 주관기관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22. 9. 1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GERI↔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9. 19 ~ 9.23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GERI→ 주관기관
▼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 평가	'23. 2	현장방문을 통한 과제수행 진도점검 정량적 성과목표 대비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외부 전문가 1~2명 등행)	GERI↔ 주관기관
▼			
최종평가 (연차평가)	~ '23. 8	사업 완료에 따른 평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 보고 /개발완성도 점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4.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 기술료 징수 없음

5. 의무사항

- 신규고용 의무를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 신규 고용 기준 >

지원금	신규 고용	비고
1억원 내외(0.75억~1.25억)	1명	1. 신규고용은 채용일 기준 2022년 2월 1일 이후부터 인정 2.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22년 2월 1일부터 사업 협약일까지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3.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1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비(인건비)는 반납이 원칙이며 현물 계상시 현금으로 납부

특허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사업계획서 내 정산수수료 책정 반영

< 위탁정산수수료 책정 기준 >

총사업비	정산수수료	비고
1억원 미만	987천원	부가세 포함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공공연구기관 1개 : 10%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2개 이상 : 5% 가산금(1개 기관 추가시마다)
3억원 이상	1,515천원	

* 연구비 규모(총사업비) : 지방비 지원금+민간현금의 합(현물 제외)

수행기관(기업)은 개발된 디바이스·서비스가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지원기관(GERI)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7. 평가 및 선정

□ 서면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 검토항목 중 부적합 사항이 1개라도 있을시 선정 제외

□ 현장평가

- 개발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기술 및 제품 점검
- 연구개발 역량, 조직, 인프라 등 점검

□ 발표평가

-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추진계획 타당성(10)	•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5
2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10
		•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10
		•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	10
3	5G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50)	• 5G 융합제품 연관성	20
		• 사업화 가능성	30
4	지역기여도 (10)	• 경북지역 산업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생산액 등)	10
합 계			100

8.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지원금의 최대 범위는 각 사업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경상북도·구미시의 지원 정책 및 예산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음

9. 과제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2. 8. 19(금) 15:00까지

* 신청 양식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www.geri.re.kr) 사업지원안내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장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신평동 분원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층 208호,
미래이동통신연구센터 추인오 선임(010-9162-5601, iochu@geri.re.kr)

- 제출서류

서류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동의서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 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날인	1부	비영리 및 '22년 창업기업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21~'22년, '21년 창업기업은 최근 1년('21년))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문의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이동통신연구센터

추인오 선임연구원 ☎ 054-460-9011, iochu@geri.re.kr

10.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지원대상 제외 항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 <http://mdgate.mrtis.go.kr>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은 제외)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업의 부도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신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자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